부산~거제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

2011년 4월 11 일

부 산 광 역 시

경 상 남 도

지케이해상도로 주식회사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

부산광역시 · 경상남도(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와 지케이해상도로주식회사(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 간에 2003년 2월 18일 체결한 부산~거제간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이하 " 본 협약"이라 한다)의 총사업비, 운영비(법인세율 변경포함), 물가변동비 및 자금재조달 등 제반 변경여건을 실시협약에 반영하기 위하여 2011년 3월 일 다음과 같이 일부 조항을 변경하는 변경실시협약(이하 "본 변경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 1 조 (정의)

본 변경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본 변경협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본 협약에서 정의된 의미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며, 변경 및 신설되는 용어의 뜻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41.

87-1. 자금재조달(Refinancing): 최근 금융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법인의 자본구조, 출자자 지분 및 타인자본 조달조건 등을 변경하는 행위를 통해 출자자의 기대수익을 극대화하려는 행위로서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87-2. 기본재무모델: 실시협약 체결 당시 제반 사업시행조건을 결정하기 위해 작성된 재무모델을 말한다.

87-3. 기준재무모델: 기본재무모델에 자금재조달 승인 신청일까지 현금흐름 실적 및 미래예측물가를 반영한 현금흐름 예상액 등을 반영하여 작성된 재무모델을 말한다.

87-4. 비교재무모델: 기준재무모델에 자금재조달 계획을 반영하여 작성된 재무모델을 말한다.

109. 추정 통행료 수입: 본 변경협약에서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부록5[추정 통행료수입]에 명시되어 있는 특정 운영연도 통행료수입에 소비자물가변동분을 반영한 금액을 말한다.

117.

제 2 조 (총사업비 및 총민간사업비)

제 3 조 (운영 및 유지비)

제 4 조 (사업수익률)

제 5 조 (차종별 기준통행료)

◇ **본 협약 제47조(차종별 기준통행료)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본 변경협약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본 도로의 1종 승용차 기준 통행료는 1999년 12월 31일 불변가격 기준 **7,699원**(통행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며, 차종의 분류에 대하여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정한 차종별 분류체계를 적용하고, 차종별 기준통행료를 산정하기 위한 요금상대계수는 다음과 같다.

1. 1종(2축차량, 윤폭 279.4mm이하) : 1.0
2. 2종(2축차량, 윤폭 279.4mm 초과, 윤거 1,800mm 이하) : 1.5
3. 3종(2축차량, 윤폭 279.4mm 초과, 윤거 1,800mm 초과) : 2.5
4. 4종(3축차량) : 3.0
5. 5종(4축 이상 차량) : 3.0

제 6 조 (자금재조달의 절차)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협약 체결 이후 자금재조달(Refinancing)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자금재조달과 관련된 계획을 주무관청에 사전 통보하고 수시로 자금재조달 진행과정을 보고 및 협의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최대한 선의의 경쟁을 통해 공정한 시장가격 및 조건에 따라 자금재조달을 추진하여야 하며, 건설기간 중 자본구조 변경시에는 본 협약에 명시된 자기자본 비율을 유지해야 하며, 운영기간중 자본구조 변경시에는 사업시행자의 자기자본비율은 자금재조달 당시 감사보고서상 관리운영권 잔액의 1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최종적인 자금재조달 내용에 대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의 판단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자금재조달로 인하여 변경되는 사업시행조건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기간 내에 실시협약을 변경하기로 한다.

⑤ 주무관청은 공공투자관리센터 등 관련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자금재조달과 관련한 사업시행자와의 협의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 7 조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의 공유)

① 자금재조달이 이루어지는 경우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간에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을 공유하기로 하며, 협약 당사자간 이익 공유의 비율은 50:50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은「기준재무모델」에서 산정되는 출자자의 기대수익률에 대비하여「비교재무모델」에서 산정되는 출자자의 기대수익률 증가분으로 측정하기로 한다.

③ 주무관청은 자금재조달에 따른 주무관청측 공유이익을 사용료 인하 등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의 처리에 대해서는 실시협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및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규정한 자금재조달 관련 세부지침 및 조건에 따른다.

제 8 조 (자금재조달 효과의 선반영)

① 본 변경협약의 당사자들은, 본 변경협약 체결일 현재 향후 예정되어 있는 신규 자금재조달의 효과를 선반영하기 위하여 1종 승용차 기준통행료와 추정 통행료 수입, 보장기준 통행료 수입, 환수기준 통행료 수입 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1종 승용차 기준통행료: 1999년 12월 31일 불변기준 7,157원
(통행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포함)

2. 추정 통행료 수입: 부록5-1 [추정 통행료수입]에 명시된 특정운영연도 통행료수입에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한 금액

3.

4.

5. 최초통행료 및 통행료의 정기적인 조정은 1호의 1종 승용차 기준 통행료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본조 1항은 운영개시일부터 운영개시일 이후 3년이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운영년도까지만 적용된다. 다만, 운영개시일로부터 운영개시일 이후 3년이 도래하는 날 이전에 자금재조달이 이루어지고 본 변경협약의 당사자들이 자금재조달 효과 및 그 적용기간에 대해 합의할 경우 본조 1항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운영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까지 자금재조달의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사업시행자가 협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운영개시일이 속한 운영년도부터 3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 도래하는 통행료수입보장액 지급기일에 추가적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1.

2. 추가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운영개시일로부터 운영개시일 이후 3년이 도래하는 날이 속한 운영년도까지 기간 동안의 상기 1호에 의해 산정된 매 운영연도 금액 합계임

④

⑤ 운영개시일이후 3년이 도래하는 날 이전에 사업시행자가 본 변경협약 제6조(자금재조달 절차)에 따라 자금재조달을 추진할 경우 주무관청에 귀속될 자금재조달이익은 본 변경협약 제7조(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공유)에 의해 산정된 자금재조달이익에서 본 조 제3항의 방식에 의해 산정된 금액을 가감하여 산정하고 산정된 공유이익은 보장기준 통행료수입비율과 1종 승용차 기준통행료의 변경 등을 통해 주무관청에 귀속시키기로 한다.

제9조 (기타수정사항)

실시협약 제48조(최초통행료) 제3항을 삭제하고, 제55조 1항은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① 본 변경협약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추정 연간 통행료수입은 부록5 [추정 통행료수입]과 같다."

제 10 조 (운영개시일까지의 시범운영)

본 사업시설의 준공일이 운영개시일에 선행하는 경우, 준공일로부터 운영개시일까지의 기간 동안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을 시범운영하며 이용자들로부터 통행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 11 조 (부속시설사업 순이익의 처리)

제 13 조 (부록의 변경)

제 14 조 (본 변경협약의 효력)

본 협약과 본 변경협약의 내용이 배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본 변경협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에 그 효력이 상실되며, 본 변경협약의 내용대로 변경된다. 다만, 본 변경협약 체결일 현재 종전의 본 협약에 따라 발생한 협약 당사자간의 권리 · 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첨부 : 부록 1 ~ 10

본 변경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은 아래에 기재한 날짜에 본 변경협약 3부를 작성하여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1부씩 보관한다.

2011년 4월 11 일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지케이해상도로주식회사
시 장 허남식	도지사 김두관	대표이사 김경수

부록 1　지케이해상도로주식회사 출자자 및 지분율

부록 2 총사업비

부록 3 총 민간사업비

부록 5 추정 통행료수입

부록 5-1 추정 통행료수입

부록 6 운영 및 유지비

부록 7 보험내역

1. 건설기간중

구분	내용	비 고
가입보험	1) 건설공사보험(제3자 배상책임보험 포함) 2) 예정이익상실보험	
보험 목 적 물	1) 건설공사보험 - 본공사 목적물, 공사용자재, 가설공사 등에 입은 재물손해 및 제3자 배상책임 2) 예정이익상실보험 - 공사지연에 따른 이익상실(A.L.O.P	
보상내용	1) 건설공사보험 - 인위적 사고 : 화재, 폭발, 도난, 작업 잘못, 전기적 사고 등 - 자연현상 또는 외래적 사고 : 폭풍우, 태풍, 홍수, 지진 등 - 기술적 원인으로 인한 사고 : 지면 침하, 사태, 붕괴 등 2)예정이익상실보험 - 공사지연에 따른 이익상실(A.L.O.P	전위험 담보
담보지역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보험기간	공사 착수시점~공사 완공시점	
보험금액	1) 건설공사보험 - 재물손해 : 공사금액 - 제3자 배상책임보험 : 20억원/사고당보상한도액 2) A.L.O.P : 운영초기 1년간 예정이익 상실분(고정비 및 이익	

2. 운영기간중

구분	내용	비 고
가입보험	1) 완성토목공사물보험(C.E.C.R) 2) 영업배상책임보험(C.G.L) 3) 기업휴지보험(L.O.P	
보험 목 적 물	1) 완성토목공사물보험:완성토목공사물 2) 영업배상책임보험: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C.G.L.) 3) 기업휴지보험:복구기간중의 이익상실(L.O.P	
보상내용	1) 완성토목공사물보험 - 인위적 사고 : 화재, 폭발, 도난, 작업잘못, 전기적 사고 등 - 자연현상 또는 외래적 사고 : 폭풍우, 태풍, 홍수, 지진 등 - 기술적 원인으로 인한 사고 : 지면침하, 사태, 붕괴 등 2) 영업배상책임보험: 제 3자 배상책임 3) 기업휴지보험: 복구기간 중의 이익상실(A.L.O.P.	전위험 담보
담보지역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보험기간	운영기간	
보험금액	1) 완성토목공사물 : 공사금액 2) C.G.L. : 20억원 연간 총보상한도액 3) L.O.P. : 복구기간중의 이익상실	

부록 8 통행료 산정을 위한 현금흐름표

부록 9

교 통 량

부록 10 본 변경협약 재무모델